

『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「민법」 개정에 따른
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
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
- 「민법」 개정 후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2건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조례 정비
 - 정신이상자 → 정신질환자
 - 장애인 → 장애인
- 「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사용용어 정비
 - 금치산자 → 피성년후견인
 - 한정치산자 → 피한정후견인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민법」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맞게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수정하고, 「민법」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